

[본조신설 2016. 6. 30.]

제15조의3(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절차) 영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[본조신설 2016. 6. 30.]

제16조(물류단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) 법 제22조의6제2항 후단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"이란 영 제15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6. 6. 30.>

[전문개정 2010. 8. 4.]

제16조의2(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절차) ① 법 제22조의7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(이하 "실수요 검증"이라 한다)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 2의3과 같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자,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(이하 "지정요청자 등"이라 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0. 12.>

1. 지정요청자등의 사업계획서
 2. 지정요청자등의 재무제표
 3. 지정요청자등의 자금조달 확약서 또는 자금조달 계획서(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)
 4.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또는 해당 물류단지의 용지·시설 등을 분양·임대받으려는 자(이하 "입주기업체 등"이라 한다)의 사업참여 동의서(입주기업체 등의 물류사업의 현황 및 입주계획을 포함한다)
 5. 입주기업체 등의 재무제표
 6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실수요 검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-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7제2항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
[전문개정 2020. 12. 23.]

제16조의3(실수요 검증 결과 통보)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·의결을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의결과를 물류단지 지정요청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심의결과 별표 2의3제2호 다목에 따라 물류단지 실수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평가항목별 평균점수를 알려야 한다. <개정 2016. 6. 30., 2020. 12. 23., 2021. 10. 12.>

[본조신설 2016. 6. 10.]

제16조의4(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) ① 법 제22조의7제2항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(이하 "실수요검증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<개정 2016. 6. 30., 2021. 10. 12.>

1.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
2. 지정요청자등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
3.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실수요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<개정 2017. 9. 20.>

③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(互選)한다.

④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. <개정 2017. 9. 20.>

1. 물류,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